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263조의2제1항 관련)

번호	과세자료제출기관	과세자료명	받을 기관	과세자료 제출시기
1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이 제92조제3항에 따라 할당관세 수량의 추천을 위임한 경우에 는 그 위임을 받은 기 관을 말한다)	제92조제3항에 따른 할당관세 수량의 추천에 관한 자료	관세청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제94조에 따라 양허 세율 적용의 추천을 위 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을 받은 기관을 말한 다)	제94조에 따른 양허세율 적용의 추 천에 관한 자료	관세청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 를 감면받는 자의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관한 자료	관세청	매년 1월 31일
4	문화체육관광부	법 제91조제1호에 따른 종교단체의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관세청	매년 1월 31일
5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법 제91조제2호에 따른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자선시설·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 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관세청	매년 1월 31일
6	외교부	법 제91조제3호에 따라 국제평화봉 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 여 기증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관세청	매년 1월 31일

		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7	환경부	법 제92조제6호에 따라 환경오염 측정 또는 분석을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기구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 한 신청에 관한 자료	관세청	매년 1월 31일
8	환경부	법 제92조제7호에 따라 상수도 수 질 측정 또는 보전·향상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관세청	매년 1월 31일
9	경주대회 지원법」에	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국제경기대회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신청에 관한 자료	관세청	매년 1월 31일
10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93조제3호에 따라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복구지원과 구호를 위하여 기증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관세청	매년 1월 31일
11	해양수산부	법 제93조제5호에 따라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채 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에 대한 관 세 면제를 위한 추천에 관한 자료	관세청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12	해양수산부	법 제93조제6호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 물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추천에 관한 자료	관세청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13	해양수산부	법 제93조제10호에 따라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선박 또는 운송수단 의 해체재 및 장비에 대한 관세 면 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관세청	매년 1월 31일

1.4	[चना-गठना <u>क्रम</u>]	비 레이크레1트뉴웨 워크 스트스크	⊸ો હો ⇒ો	-n . J
14	「국민체육진흥법」에	법 제93조제15호에 따른 운동용구	관세청	매년
		(부분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관세		1월 31일
	한장애인체육회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1.5	7 11 21	[비시기비 기체가 제60구제1취	ગો મોરો	د راد
15	국세청	「법인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관세청	매년
		에 따른 특수관계인 간 거래명세서		7월 31일
		자료		
16	 국세청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관세청	매년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		7월 31일
		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		
		리계산서) 자료		
17	국세청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에 따	관세청	매년
		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9월 30일
		자료		
18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	관세청	매일
		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		
		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		
		료		
19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에	관세청	매년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		1월 31일,
		계표 자료		7월 31일
20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	관세청	매년
		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		7월 31일
		출방법 신고서		
21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	관세청	매년
		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		7월 31일
		세서 자료(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		
		를 포함한다)		
22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	관세청	매년
		4조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7월 31일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자료		
23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관세청	매년
		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	. 5	7월 31일
		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 자료		

24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관세청	매년
		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	, -	7월 31일
		외출자 명세서 자료		
25	외교부	「여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	인천공항	실시간
		권발급에 관한 자료	세관	
				2
26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제3조 및 제6조		매일
		에 따른 국민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	세관	
		사에 관한 자료		
27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	관세청	매일
		동차 등록에 관한 자료		
28	조달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관세청	매일
		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조달계약		
		에 관한 자료		
29	국세청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법	관세청	매년
		인세 환급금 내역(관세 등의 체납이		4월 30일
		있는 자만 해당한다)		
30	국세청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종	 관세청	매년
		합소득세 환급금 내역(관세 등의 체	, -	6월 30일
		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31	국세청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부	 관세청	매년
		 가가치세 환급금 내역(관세 등의 체	1 , 0	2월 25일,
		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5월 25일,
				8월 25일,
				11월 25
				일
32	국세청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관세청	매월 5일
		나목에 따른 이용권·회원권 자		
		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33	국세청	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관세청	매년
	, ,, 0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u> </u>	10월 31일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		
		만 해당한다)		
		나.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		
		만 해당한다)		
		//		

		다.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34	지방자치단체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에	관세청	실시간
34	시청사시원제 	따른 지방세환급금 내역(관세 등의	선세경	결계신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35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20조·제21조에	관세청	매월 15일
		따른 과세물건(부동산·골프회원		
		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항공기 · 선		
		박만 해당한다)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36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	관세청	매년
		대상(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항공		10월 15일
		기·선박만 해당한다)에 대한 재산		
		세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관세 등 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그 세념의 있는 사진 예정인다/		
37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관세청	매월 5일
		률」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		
		른 부동산(「건축법 시행령」 별		
		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정한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한 자료(관		
		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		
		다)		
38	특허청	가. 「특허법」 제87조제2항에 따	관세청	매년
		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		4월 30일,
		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10월 31일
		해당한다)		
		나. 「실용신안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		
		는 자만 해당한다)		
		다. 「디자인보호법」 제39조제2항		
		에 따른 다자인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		

		는 자만 해당한다)		
		라. 「상표법」 제41조제2항에 따		
		른 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		
		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39	법원행정처	「공탁법」 제4조에 따른 법원공탁	관세청	매년
		금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		4월 30일,
		만 해당한다)		10월 31일
		, 2 ,,		
40	「여신전문금융업법」		관세청	실시간
	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호에 따른 거주자의 「여신전문금		
	및 여신전문금융업협	융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회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41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81조의2	 관세청	매년
41		제3항에 따른 비거주자 중 외국기	건계6	7월 31일
		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		/ 担 01 担
		자료		
42	국세청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비거	관세청	매년
		주자의 사업소득 및 선박 등의 임대		7월 31일
		료ㆍ사용료ㆍ인적용역 등 기타소득		
		의 지급명세서 자료		
43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55조에 따른 제조자	관세청	매일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반출신고에 관		
		한 자료		
44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 제6	관세청	매일
	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	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문금융업협회	정보 관리 업무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45	「국민건강보험법」에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관세청	매년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에		1월 31일, 7
		관한 자료		월 31일
46	「국민건강보험법」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관세청	매년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		1월 31일, 7
		显		월 31일
47	「무역보험법」에 따	「무역보험법」 제5조의2에 따른	관세청	매년
	른 한국무역보험공사	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자료		1월 31일, 7
				월 31일

		,		
48	국세청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른 주	관세청	매년 10월
		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자료(관세 등		15일
		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49	「한국수출입은행법」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관세청	매월 15일
	에 따른 한국수출입은	해외직접투자 신고 자료		
	행			
50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법」 제62조에 따른	관세청	매년 1월 3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에 관한 자		1일, 7월 31
		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		일
		당한다)		
51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법」 제72조에 따른	관세청	매년 1월 3
		전세권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1일, 7월 31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자료(관세 등		일
		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52	「금융실명거래 및 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관세청	매년 4월 3
	밀보장에 관한 법률」	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거래		0일, 10월 3
	제2조제1호에 따른 금	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		1일
	융회사등(「한국수출	는 자만 해당한다)		
	입은행법」에 따른 한			
	국수출입은행과 「한			
	국은행법」에 따른 한			
	국은행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매년
53	국세청		관세청	
54	국세청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관세청	10월 31일 매년
34	† ^ ´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선세경	"N 12
		제62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		3월 31일,
		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9월 30일
	[그미키키 및 취임	처분내역 [구마기카니침버 레C크 미 제	ਹੀ ਮੀ ਤੀ	페이 드스
55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제	관세청	매월 5일
	에 따른 국민건강보	70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관한		
	험공단	자료 및 통보된 보수 등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56	방위사업청 	「방위사업법」 제57조의2에 따	관세청	매년
		른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3월 31일
		한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57	방위사업청	「방위사업법」 제57조의4에 따	관세청	매년
	· · · · · -			, -

		른 중개수수료의 신고 자료		3월 31일
58	「무역보험법」에	「무역보험법」 제53조제1항제1	관세청	매년
	따른 한국무역보험	호 및 제53조의3제1호에 따른 무		1월 31일,
	공사	역보험 종류별 보험계약 체결에		7월 31일
		관한 자료		
59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관세청	매년
	에 따른 건강보험심	및 제46조에 따른 치료재료에 대		4월 30일,
	사평가원	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과		10월 31일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자료		
60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	관세청	매년
	에 따른 건강보험심	른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		4월 30일,
	사평가원	용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한 자료		10월 31일
61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75조제1호	관세청	매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		2월 15일,
		에 따른 월별 거래 명세(판매대행		5월 15일,
		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로서 법		8월 15일,
		제19조에 따른 관세 부과ㆍ징수		11월 15일
		및 법 제222조에 따른 구매대행		
		업자의 등록에 필요한 자료		

비고

- 1. 제15호부터 제24호까지의 과세자료는 수출입실적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관세 등 부과·징수를 위한 자료로서 관세청장과 국세청장이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맞는 것만 해당한다.
- 2. 제40호의 신용카드업자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중 건별 금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은이를 관세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3. 위 표에 따른 과세자료제출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가.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일인 경우: 제26호는 전전날의 과세자료분, 제18호·제27호·제28호·제43호 및 제44호는 전날의 과세자료분

- 나.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월 5일 또는 매월 15일인 경우(제32호·제35호·제37호·제 49호·제55호): 전월의 과세자료분
- 다.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인 경우(제40호):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3개월의 과세자료분
- 라.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2월 25일, 5월 25일, 8월 25일, 11월 25일인 경우(제31호):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3개월의 과세자료분
- 마.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31일, 7월 31일인 경우(제1호·제2호·제11호·제1 2호·제19호, 제45호부터 제47호까지, 제50호·제51호·제58호):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6개월의 과세자료분
- 바.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인 경우(제38호·제39호·제52호·제59호·제60호):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6개월의 과세자료분
- 사.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31일인 경우(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제14호):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 아.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4월 30일인 경우(제29호): 전년도의 4월부터 해당 연도의 3월까지의 과세자료분
- 자.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6월 30일인 경우(제30호): 전년도의 6월부터 해당 연도의 5월까지의 과세자료분
- 차.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7월 31일인 경우(제15호·제16호, 제20호부터 제24호까지, 제41호, 제42호):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 카.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9월 30일인 경우(제17호):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 타.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0월 15일인 경우(제36호·제48호): 전년도의 10월부터 해당 연도의 9월까지의 과세자료분
- 파.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0월 31일인 경우(제33호 및 제53호) :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 하.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3월 31일, 9월 30일인 경우(제54호):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6개월의 과세자료분
- 거.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3월 31일인 경우(제56호 및 제57호): 전년도의 3월부터 해당 연도의 2월까지의 과세자료분
- 너.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2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및 11월 15일인 경우(제61호):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직전 분기의 과세자료분